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5 /사진=이동훈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임기 보장'을 놓고 맞붙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임기 보장 조항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해임 주주총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심리에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에 대해 '각종 임무위배행위와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해임 주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이브측이 주장한 민 대표의 비위는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 계약 해지 기획 △주주 간 계약서 공개로 인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스타일링 외주 용역비 근로자 수취 등이다.아울러 하이브는 계약서상 임기보장 조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판례상 이유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먼저 행사한 후, 그 의결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이유가 상법상 이사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의 뉴진스 어도어 전속 계약 해지 주장은 단순한 우려를 왜곡한 것이고, 주주 간 계약서 공개는 신뢰가 깨져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외주 용역비 역시 애초에 어도어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총 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